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9. 9. 20.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년 9월 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9년 9월 4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66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1999년 9월 13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홍성배)

- 가. 개정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완화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지원목적을 위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 제3조를 추가 명시함(안 제1조 목적)
  -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법령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조의2 정의)
  - 직제개편에 따른 직제를 변경함(안 제5조제2항)
  - 은행법 관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줄이기 위함(안 제5조제4항)
  - 잦은 직제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줄이기 위함(안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 매년 초 구청장은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안 제7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유재한)

본 조례안은 '93. 6. 11(조례 제226호) 제정하여 2차에 거쳐 개정 시행에 오면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 왔으나 IMF이후 급격히 중소기업이 도산 또는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기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상 미비한 점을 정비 또는 보완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법 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추가로 제정되어 중소기업육성을 뒷받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개혁으로 직제의 개편 등으로 직제변경과 용어를 정리하며 매년 연초에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수시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회수되는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이 기업의 운전자금이 꼭 필요하여 기금을 융자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기업운영에 쓰이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기금 유용이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은행금리가 하향 조정되어 있는 관계로 융자의 조건이 은행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면 자치단체에서 지역 중소기업 지원책이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보아 융자의 금리를 은행보다 더 낮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
----------	----

제출년월일 : 1999. 9. 2.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완화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지원목적을 위해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를 추가 명시함.(안 제1조 목적)
- 나.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법령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조의 2 정의)
- 다. 직제개편에 따른 직제를 변경함(안 제5조제2항)
- 라. 은행법 관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줄이기 위함(안 제5조제4항)
- 마. 잦은 직제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을 줄이기 위함(안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
- 바. 매년초 구청장은 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내에서 추가 융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안 제7조의 2)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이견없음

※따로붙임 :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공장 건설·시장재개발·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점포시설개선·제조업관련 지식 서비스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5. “기술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6.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을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함은 제조업지원과 관련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업, 연구 및 개발업,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업, 엔지니어링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을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담당계장”을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생활국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를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국장 및 담당 상임위 구의원, 수탁금융기관의 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서기는 중소기업계장이 된다”를 “간사는 담당과장이,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된다”로 한다

제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융자계획수립 및 추가융자)

- 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해당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u>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u> ……</p> <p>.....</p> <p>.....</p> <p>.....</p>
<p>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2조(기금의 설치)</p> <p>.....</p> <p>.....</p> <p>.....</p>
<p>(신 설)</p>	<p>제2조의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li> <li>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li> <li>3.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정보화 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공장건설·시장재개발·시장시설개선·공동창고설치·점포시설개선·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 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li> <li>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li> <li>5. “기술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li> <li>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li> </ul> </li> </ol>

현행	개정안
<p>제5조(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은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 관리 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 한다.</p> <p>②기금운용관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p> <p>③(생략)</p> <p>④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⑤(생략)</p> <p>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국장, 시민생활국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p> <p>③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서기는 중소기업계장이 된다.</p> <p>④(생략)</p> <p>⑤(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6. “<u>창업</u>”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7. “<u>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u>”이라 함은 제조업지원과 관련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업, 연구 및 개발업, 시장조사 및 사업경영상담업, 엔지니어링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을 말한다.</p> <p>제5조(기금운용 관리) ①.....</p> <p>.....</p> <p>.....</p> <p>②.....</p> <p>..... <u>해당 업무담당주사</u> .....</p> <p>③(현행과 같음)</p> <p>④ .....</p> <p>..... <u>은행법상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u></p> <p>⑤(현행과 같음)</p> <p>제6조(기금운용위원회) ①.....</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②.....</p> <p>..... <u>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국장 및 담당 상임위 구의원, 수탁금융기관의 장, 구청장이 위촉하는 관련단체나 기관의 인사로 한다.</u></p> <p>③.....</p> <p>..... <u>간사는 담당과장이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 2(유자계획수립 및 추가유자)</p> <p>①<u>구청장은 매년초에 유자총액, 유자한도, 유자조건, 유자절차 등의 기금유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u>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내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유자할 수 있다.</u></p>